직장가입자 구분 기준

# 목차

1. 개요

2. 본문

2-1. 1. 근로자 및 사용자

2-2. 2. 공무원 및 교직원

2-3. 3. 임의계속가입자

2-4. 4. 피부양자

# 1.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근로자 및 사용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함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 2. 본문

## 2-1. 1. 근로자 및 사용자

1. 근로자 및 사용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법 제6조제 2항). 이 법 제정 당시에는 보험 관리의 어려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였었으나, 다른 근로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20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자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영제36조제 4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두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 각 보수 월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각 각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가 국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현지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국내 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단 실무에서는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 법인은 별개의 법인 격을 가지는 점, 국내 법인과 사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국내 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편, 사용자를 이 법 상 직장가입자로 할 것인지 지역가입자로 할 것인가는 사회 보장 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소외 인들의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방문 요양 제공 행위는 법 제24조와 무관하고,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2. 2. 공무원 및 교직원

1.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 2-3. 3.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법 제110조 제2항) 임의계속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 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사람 을 약칭 한 용어로 가입자의 종류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2-4. 4. 피부양자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따라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